**사랑과 헌법**

5분반

조수영, 이욱한 교수님

중간고사 대체과제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과학과

2016133

이유진

4차 산업혁명 이후 AI의 능력이 발전하고 강조되며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다.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어로,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1]](#footnote-1) 인공지능의 성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여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영역을 대신한다. 심지어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랑의 자유의 영역에 인공지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일’이라고 정의된다.[[2]](#footnote-2) 즉 인간의 사랑이란 이성과 감정의 조화로 이루어진, 주체가 직접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보이는 사랑이란 ‘머신 러닝’에 의한 데이터 학습의 결과이다. 인공지능은 사랑의 감정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랑이라는 감정을 학습하며, 이를 활용하여 행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금보다도 더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AI와의 사랑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사랑은 상호간의 소통과 교감이 필수적이지만 이것 역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방향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감정 작용에 대한 미래가 예측된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약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대표적 모델은 로봇인데, 상업적으로는 Aibo와 같은 다양한 robot pets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과 교감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위 Social Robot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로봇은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인간과 교감할 수 있다.[[3]](#footnote-3)

즉, AI가 보이는 사랑의 본질이 어떠하든 그를 대하는 인간의 감정은 그 자신의 자유인 것이다. 양방향의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보이는 사랑이 착각이나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과 관련된 산업의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이 생기고 점점 확대되어 하나의 산업이 된다면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 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논쟁되어 왔으며, 특히 반사회적 영향력으로 그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이다. 여기서 여성 인권 문제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성 산업의 확산으로 일상에서의 여성이 모두 성적 대상화의 타깃이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 ‘리얼돌’과 관련하여 큰 이슈가 있었다. 리얼돌은 크기와 외형이 여성의 신체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섹스돌이다. 섹스돌과 인공지능의 긴밀한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 진짜 여성 같은’ 성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제작된 섹스돌이 있으며, 이 제품은 심장 박동, 호흡 등 인간의 생리 현상을 흉내 내어 더 현실감 있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성 산업은 사회적 여성상에 대한 관점을 고착화하며 여성의 신체가 남성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도록 유도한다. 하나의 인격체가 사람이 아닌 성적 도구만으로 폄하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인식이 계속되면 현실의 여성에게도 성폭력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페도필리아 등 비윤리적인 성적 취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순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최근 리얼돌과 결혼한 남성의 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남성은 리얼돌과 2년 가까이 열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섹스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를 흥분시킨다”고 밝혔다. [[4]](#footnote-4) 이 사례는 앞서 언급한’ AI가 보이는 사랑의 본질이 어떠하든 그를 대하는 인간의 감정은 그 자신의 자유’라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앞서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 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주장하는 사랑할 자유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또한 사랑에 반드시 성행위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감정 없이 욕망의 해소를 위하여 성만을 쫓는 행위 역시 흔히 존재한다. 따라서 사랑할 자유를 명분으로 성산업의 확산을 합리화하는 것은 윤리적, 논리적으로 모순적이다.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인권에 위협이 되는 성산업으로 확장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의 권리를 대형 산업이 선두에 서서 위협하는 이 경우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을 근거로 리얼돌을 성기구로 판단하여 수출입을 허용한 것이다.[[5]](#footnote-5)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항을 개인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는 이러한 악영향의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생산, 수입 등의 확산을 중지시켜야 한다. 리얼돌의 등장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일 뿐인 것이다.

**참고 문헌**

김경희, 박채운, 조기호, 「나와 똑같은 리얼돌, 누군가의 집에 있다면」, 『SBS뉴스』, 2019.7.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8791&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네이버 지식백과』,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과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17(4), 2016. 537~565쪽.

이지영, 「2년 열애끝 결혼, 하객들도 축하…신부는 '리얼돌'이었다」, 『중앙일보』, 2020.1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37238>)

『표준국어대사전』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73232&cid=58439&categoryId=58439>) [↑](#footnote-ref-1)
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footnote-ref-2)
3.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과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17(4), 2016. 537~565쪽. [↑](#footnote-ref-3)
4. 이지영, 「2년 열애끝 결혼, 하객들도 축하…신부는 '리얼돌'이었다」, 『중앙일보』, 2020.1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37238>) [↑](#footnote-ref-4)
5. 김경희, 박채운, 조기호, 「나와 똑같은 리얼돌, 누군가의 집에 있다면」, 『SBS뉴스』, 2019.7.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8791&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footnote-ref-5)